



분야별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 대상여부

(관광단지개발 및 체육시설 분야)

질의

현재 온천을 개발하고자 시추를 하여 관할관청에서 온천발견신고 수리를 득한 곳으로 금번에 「온천법」 제5조 규정에 의거 온천공보호구역 지정을 득하고자 함.

이런 경우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 대상인지?

답변

온천공보호구역지정을 위하여 「온천법」 제5조에 따라 승인 받는 경우는 「자연재해대책법」 제5조에 따른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 대상이 아님

질의

「자연재해대책법」 제정 이전인 2000년도에 「온천법」에 의한 개발계획이 수립된 지역에 부지면적이 변경 없는 상태에서 온천개발계획 변경승인 신청 시 사전재해 영향성검토협의를 거쳐야 하는지?

답변

「온천법」 제10조에 따라 온천개발계획 승인을 받는 경우에는 「자연재해대책법」 제4조에 따른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를 하여야 하며, 변경 승인을 받는 경우에는 대상규모(부지면적)가 30% 이상 증가하는 경우와 30% 미만이라도 증가하는 대상규모가 45,000㎡ 이상에 한하여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를 하여야 함.

질의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르면 온천개발계획 승인 전에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를 받게 되어 있는 바, 당사의 경우 온천개발계획 면적이 당초보다 감소(276,469㎡→188,815㎡/감87,654㎡)하게 되는데 이런 경우에도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를 받아야 하는지?

답변

「온천법」 제10조에 따라 온천개발계획을 승인 받을 경우에는 개발계획 승인 전에 「자연재해대책법」 제4조에 따라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를 하여야 하며, 변경 승인을 받는 경우에는 대상규모(부지면적)가 30% 이상 증가하는 경우와 30% 미만이라도 증가하는 대상규모가 45,000㎡ 이상에 한하여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를 하여야 함.

질의

「관광진흥법」 제52조에 따른 관광지 지정을 하고자 합니다. 관광지 지정전 사전 재해영향성검토협의를 하여야 하는지?

답변

- 개정된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6조 제1항 별표 1를 보면 「관광진흥법」 제52조에 따른 관광지 또는 관광단지 지정시 「자연재해대책법」 제5조에 따른 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 대상임.

방재정보광장

질의 회신

• 또한 「관광진흥법」 제54조에 따른 관광지 또는 관광단지 조성계획 승인시 「자연재해 대책법」 제 5조에 따른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 대상임을 알려드립니다.

질의

1998년도 관광단지 지정, 1999년도 관광단지 조성 계획 승인 및 사업시행자 허가를 받아 추진 중인 사업장에 대하여 향후 경미한 변경이 있을 경우 사전 재해영향성검토협의를 받아야 하는지와 협의대상이 라면 검토협의 회수와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조성 계획 승인권자는 도지사임)

답변

「관광진흥법」 제54조에 따른 관광단지 조성계획을 승인 받을 경우에는 「자연재해 대책법」 제4조에 따 른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를 하여야 하며, 변경 승인을 받는 경우에는 대상규모(부지면적)가 30% 이상 증가하는 경우와 30% 미만이라도 증가하 는 대상규모가 45,000㎡ 이상에 한하여 사전재해 영향성검토협의를 하여야 함.

질의

「관광진흥법」 제15조에 따른 관광사업계획 변경과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 당초승인일 : 2004. 10.30
- 사업계획변경내용
 - 대지면적 감) 19㎡, • 건축면적 감) 201.52㎡
 - 객실 수 : 감) 31실
 - 객실용도변경 : 콘도미니엄 증) 1,144.55㎡,
 - 관광호텔 감) 2,350.59㎡

상기와 같이 대지 및 건축면적과 객실 수가 감소하 고, 객실에 대한 용도변경 만 발생하는 경우에도 사 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를 하여야 하는지?

답변

「관광진흥법」 제15조에 따른 관광사업계획의 경우 는 「자연재해대책법」 제5조에 따른 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 대상이며, 변경 승인을 받는 경우에는 대 상규모(부지면적)가 30% 이상 증가하는 경우와 30% 미만이라도 증가하는 대상규모가 45,000 ㎡ 이상에 한하여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를 하여 야 함.

질의

- 「관광진흥법」 제15조 및 동법 제16조에 의거 관광 사업계획 승인 시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 대상 으로 되어 있으나, 부지조성이 아닌 단순 크루즈 선을 이용 관광호텔(수상관광호텔) 설치 시에도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 대상인지?
- 동 사업계획은 「자연재해대책법」 제5조 및 동법시 행령 제6조 “별표1” 아 2)항 규정에 의거 「관광진 흥법」 제15조에 따른 관광사업계획은 사업계획 승 인 전에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 대상으로 되어 있으나, 관광사업을 위하여 부지 조성이 아닌 단 순 크루즈선을 이용 바다에 수상호텔을 조성 시에 도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 대상인지?

답변

- 「관광진흥법」 제15조가 정한 관광사업계획 승인을 받는 경우에는 사업계획 승인전에 자연재해대책 법 제4조가 정한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를 하여 야 하며,
- 바다위에 크루즈선을 이용하여 수상호텔을 설치 하는 경우, 태풍이나 폭풍, 해일 등에 의하여 동 시설이 전복되는 등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태풍 등에 대한 재해영향성검토가 필요함.